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에서 미국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의 수출통제와 시사점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 상 만

*논문접수 : 2025. 7. 20. *심사개시 : 2025. 7. 21. *게재확정 : 2025. 8. 6.

〈목 차〉

I. 서론	III.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에서 ITAR(국제무기 거래규정)의 수출통제와 시사점
II. 조선협력 동향과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의 중요성	1. 미국의 수출통제 개관
1. 한국과의 조선협력 동향	2. ITAR에 의한 수출통제와 문제점
2. 미 해군력 강화와 해군 함정 MRO 협력	3.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에서 ITAR의 시사점
3.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글로벌 조선산업은 국제적 환경규제¹⁾와 해운시장의 연비 향상 요구에 따라 고효율·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미-중 해양패권 경쟁, 주요국의 해양안보·해군력 강화

1) 현재 조선·해운 관련 대표적인 국제적 환경규제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IMO 2020’과 유럽연합(EU)의 ‘EU MRV Shipping Regulation’이 있다. IMO 2020은 산성비를 유발하는 황산화물(SOx) 배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박용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율을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출 것을 규정하고, EU MRV Shipping Regulation은 해운부문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EU 회원국 역내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및 기후정보의 모니터링·보고·확인 등을 규정한다.(김상만,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2019,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2019, 158-161면).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인도 등 다수의 국가에서 한국과의 조선협력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²⁾ 협력 파트너로 한국 조선업체가 주목받고 있다.³⁾

미국 정부는 중국이 노리는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2024년 11월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 및 MRO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2025년 1월 6일 인터뷰에서도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⁴⁾ 이와 같이 미국은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통해 미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도 한국·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조선분야에서 공동건조, 기술협력, MRO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노후선박 증가로 조선산업에서 MRO가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국의 조선·해운업 재건 및 강화, 미 해군 함정 MRO 등에 한국 조선소가 실질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통하여 한국 조선소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향후 함정 수출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을 통하여 군용물자(defense articles)⁶⁾ 및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⁷⁾에 대하여 엄격한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기수출통제법(AECA)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이해와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2) MRO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유지·보수·정비)는 함정, 선박, 항공기 등의 Maintenance(정비), Repair(수리), Overhaul(분해조립)을 말한다. 함정 MRO를 통하여 노후 함정은 거의 신조 함정과 동일한 외관과 성능을 보유하게 된다.

3) 국내 조선소 중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시작하였다.

4) 최용호, “美 조선 해운 강화 법안: SHIPS Act 분석 및 시사점”, 경제안보 Review 25-1호, 외교부, 2025, p.4.

5) Henry H. Carroll & Cynthia R. Cook, “Identifying Pathways for U.S. Shipbuilding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Allies”, CSIS Briefs, 2025. 5. 15., pp.1-2.

(<https://www.csis.org/analysis/identifying-pathways-us-shipbuilding-cooperation-northeast-asian-allies>).

6) “defense articles”은 ‘군용물자’, ‘군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등 다양하게 옮기는데, 이 논문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군용물자’로 옮겼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군용물자목록)).

7) “defense services”은 ‘국방서비스’, ‘국방용역’, ‘군용서비스’, ‘군용용역’ 등 다양하게 옮기는데, 이 논문에서는 ‘국방서비스’로 옮겼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의 조선협력 동향과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미국의 수출통제와 ITAR에 의한 무기수출통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에서 ITAR의 수출통제와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MRO 협력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조선협력 동향과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의 중요성

1. 한국과의 조선협력 동향

최근 글로벌 조선산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안보가 중요해지면서, 동맹국 간 조선·해양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운 시장의 연비 향상 요구와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로 고효율·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미중 해양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여 함정 및 잠수함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조선산업을 재건·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해군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함정 MRO에 대하여 기술력 있고 신뢰할 만한 해외 조선소와 협력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조선산업 및 군함 MRO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밝힌 바 있고, 2024년 8월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여 2025년 3월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2024년 11월 급유함인 유콘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고, 2025년 7월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으며, 2025년 8월 초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화물보급함 ‘USNS 앨런세퍼드’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했다.

그 외 인도, 동남아, 중동 지역 국가들도 한국과의 조선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해군력 강화, 해양안보 전략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 건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건조, 수리까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은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International Submarine Technology Conference, ISTC)’⁸⁾를 개최했고, 그 다음 날

8) 이 컨퍼런스는 2024. 11. 12.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수함 기술의 진화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

폴란드, 사우디, 페루 대표단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그리고 2024. 11. 29. ~ 12. 3.의 기간에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 방문단⁹⁾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의 ‘빅 3’ 조선소(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 기술과 생산 능력을 직접 확인한 후, 인도 현지에서의 조선소 설립, 기술 이전, 공동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2025년 7월 HD현대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인도 코친 조선소(CSL)¹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코친 조선소 설계·구매 지원,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인적 역량 강화·교육 훈련 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인도와 그밖의 해외 시장에서 선박 수주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2. 미 해군력 강화와 해군 함정 MRO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안보가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압도적 우위의 해군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 부문은 건조 능력 부족, 산업 기반 제약, 비용 초과, 인도 지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미국의 230배 이상의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항해용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미국 조선소는 20개에 불과하다.¹¹⁾ 2023년 기준 중국의 선박 수주는 1,700척 이상인 반면, 미국의 선박 수주는 5척에 불과하고, 중국 조선소는 689척의 상선을 인도하고, 30척의 함정을 중국 해군에 인도하였으나, 미국 조선소는 상선은 한 척도 인도하지 못했고, 미 해군에 9척의 함정만 인도했다.¹²⁾

제로 한국형잠수함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고 국제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사)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잠수함의 정책, 발전 및 협력 방안, 잠수함 관련 소재-부품-기술 확보 및 발전 방향, 한국형 잠수함 소나 및 전술훈련장비 개발 현황과 잠수함 건조 및 탑재장비 등에 대한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기관과 방산업체, 폴란드, 칠레,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잠수함 관련 국내외 정책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했다(2024. 11. 12.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K-잠수함 기술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9) 이 방문단에는 쉬리 티케이 라마찬드란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 외에 마두 나이르 코친조선소 최고경영자(CEO)와 비네쉬 쿠마르 티야기 SCI 회장 등 인도 조선업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10)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위치한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인도 정부가 67.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형 상선 60척, 함정 10척 등 총 70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상선부터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11) US Congress, H.R.3151 - 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119th Congress (2025-2026), paras. 7-10.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3151/text/ih>).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중국은 정부에서 조선산업을 지원해 왔고, 그 결과 중국의 상선 건조는 1999년 전 세계 5%에서 현재 50%까지 눈부시게 성장하였고, 컨테이너선, 탱커선 외에 군함까지 건조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중국의 선박 건조능력을 국가안보로 보고 있다.¹³⁾ 미국 조선업 쇠퇴로 선박 건조·수리 역량이 약해졌고 미국 해양 패권의 기둥인 해군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조선시장 1위를 차지하고, 해군 함정 수에서 미 해군을 앞서기 시작했다. 해군 함정 수를 비교해 보면, 2000년 미국은 318척, 중국은 110척을 보유했으나, 2020년 중국은 350척으로 미국의 293척을 추월했다.¹⁴⁾ 이에 따라 미국은 해군력 증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방국(일본, 한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제기되고 있다.¹⁵⁾ 구체적 협력방안으로는 동맹국의 MRO 협력,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활성화, 모듈식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 건조, 미국의 동맹국 건조 함정 구매 등이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 현대화 및 해군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강국이자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2024년 11월 대선 직후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¹⁶⁾ 2025년 1월에는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통해 미 해군 및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조선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5년 5월 발표한 보고서(“Identifying Pathways for U.S. Shipbuilding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Allies”)에서 미국 해군이 인도·태평양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맹국과의 조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 인력 부족 등 자국 조선업 문제 극복 방안으로 한국, 일본 등과의 조선협

12) Bryan Clark & Michael Roberts, “How America can rebuild its fleet to counter China’s maritime dominance”, The HILL, Jan. 14, 2025.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5083704-how-america-can-rebuild-its-fleet-to-counter-chinas-maritime-dominance/>)

13) Matthew P. Funairole, “The Threat of China’s Shipbuilding Empire”, CSIS, May 10, 2024, p.2.

14) 김덕기, “트럼프 2.0 시대, 한·미의 미국해군 함정 MRO와 함정 건조를 위한 협력 방안”, 군사논단, 제122호, 한국군사학회, 2025, 91-92면.

15) Henry H. Carroll & Cynthia R. Cook, *supra* note 5, p.1.

16) (2024.11.7. 한미 정상 간 통화)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 11. 26.자 한겨레신문, “‘세계최강’ 미국 조선업·해군이 무너지고 있다…한국엔 기회”)

력을 제언하였다.¹⁷⁾ 동 보고서는, 미국은 함정 건조 지연, 숙련 인력 부족, 노후 조선소, MRO 미비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중국은 조선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2023년 기준 세계 선박 인도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바, 미국의 자국 내 조선 역량 보완, 동맹국의 MRO 역할 확대, 동맹국의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등 투자 확대, 모듈화 공동생산, 동맹국에서 건조한 군함 구매 등의 검토를 제안하고, 한국은 이미 미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함정 MRO는 해군의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역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체 조선소가 부족하고, 그마저 설비 노후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군함 MRO 지연이 심각하다고 한다.¹⁸⁾ 특히 서부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제7함대(United States Seventh Fleet)는 일본 내 자체 정비센터를 운영 중이나, 증가하는 MRO 수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이 미군 함정 MRO 사업권 수주 경쟁에 있다.

2025년 1월 미국 의회예산처 분석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보유 함정 296척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해군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총 364척(연 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하고, 미 해군은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¹⁹⁾

3.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

조선산업은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전방산업으로 해운·에너지·레저산업 등이 있고, 후방산업으로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비철금속 등이 있다. 한편, 함정 MRO는 전방산업으로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 등과 후방산업으로 기계, 철강, 전기 전자, 화학, 금속산업 등이 있어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함정 MRO는 글로벌 경기흐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보통 함정 MRO는 일정 주기(약 5년)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조선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전략적 위치를 바탕

17) Henry H. Carroll & Cynthia R. Cook, *supra* note 5, p.1.

18) 이소영,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한국방위산업 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 53면.

19) 이 계획대로라면 미 해군 함정 규모는 현재 296척에서 381척까지 늘어나게 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 Global Market Report 25-005, 2025, 22면.).

으로 함정 MRO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Mordor Intelligence에 의하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2025년 613.8억 달러에서 2029년 716.2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²⁰⁾ 특히 미국 제7함대는 제때 수리하지 못해 전투함 100여 척 중 30~40척만 운용하고 있고, 잠수함도 수리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사례가 많아 군함 MRO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 조선업을 한·중·일 3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2파전이 예상된다.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에 MRO를 맡기고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 해군력을 증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조선업계는 몸집 키우기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대만이나 필리핀을 둘러싼 분쟁 중 자국 군함이 손상될 경우 이를 미국령인 괌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 해안에서 수리해 왔는데,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에 수리를 맡기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 해군 함정 MRO 수주를 통하여 한국은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나아가 함정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25년 5월 보고서(“Identifying Pathways for U.S. Shipbuilding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Allies”)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군사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건조 속도와 품질 모두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²¹⁾ 다만, 미국 내 주문량을 희생하면서 해외 조선소에 생산을 집중시키는 경우, 자국 조선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미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7월 22일 한화오션은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aster Ship Repair Agreement, MSRA)을 체결하여 미 해군 함정 MRO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24년 8월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여 2025년 3월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2024년 11월 급유함인 유콘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으며, 2025년 7월에는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²²⁾의 정기 수리 사

20) Mordor Intelligence, “Naval Vessel MRO Market Size & Share Analysis - Growth Trends & Forecasts (2025 - 2030)”.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naval-vessels-maintenance-repair-and-overhaul-market>)

21) Henry H. Carroll & Cynthia R. Cook, *supra* note 5, p.1.

22) 찰스 드류함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 군함으로 배수량 41,000톤, 길이 약 210m, 선평 32m 함정으로 화물과 탄약 등을 보급하는 비전투함이다.

업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윌리 쉬라함과 유콘함을 고치는 과정에서 함정의 새로운 수리 요소를 발견해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을 하였다. 한편, 2024년 7월 11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여 전투함과 지원함 정비 사업 입찰 자격을 확보했고, 2025년 8월 초 미 해군 화물보급함 ‘USNS 앨런세퍼드’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계속하고, 2024년 10월 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33)”²³⁾을 수립하였다.

III.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에서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의 수출통제와 시사점

1. 미국의 수출통제 개관

1) 국제적 무기수출통제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물자 또는 그에 준하는 물자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외교정책 등을 위하여 수출품이나 기술 등이 테러, 군용 등 우려 용도로 사용되거나 우려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정부의 수출 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²⁴⁾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은 유사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은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전략물자의 수출통관을 담당하고,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담당한다.

국제사회는 군축과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23)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33)”, 2024.

24) 김지혜, “미국 수출통제 안내 가이드”, 전략물자관리원, 2021, 4면.; 방위사업청, “미국의 무기거래규정(ITAR) 번역”, 방위사업청, 2019, 3면.

25) 김지혜, 전거서, 4면.; 방위사업청, 전거서, 3면.

있고, 각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를 위한 기본원칙과 체제별 통제품목을 정하며, 회원국 정부는 수출통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다.²⁶⁾ 주요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국제수출통제체제²⁷⁾

구 분	바세나르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WA)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 Group, 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ustralia Group, AG)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설립 배경	재래식 무기 및 무기 제조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COCOM 후속체제)	인도 핵실험(1974)을 계기로 핵원료 물질 통제	이란-이라크전시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한 생화학무기 원료물질 및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1980년초 일부 국가의 미사일 개발로 인한 미사일 및 생산설비에 대한 수출통제
설립	1996년 7월	1978년 1월	1985년 4월	1987년 4월
가입국	41개국	48개국	42개국(EU포함)	34개국
한국 가입	1996년 7월	1978년 1월	1996년 10월	2001년 3월

9·11 사태 이후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문제가 국제안보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체제 강화와 글로벌 테러의 원인이 되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선도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²⁸⁾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등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를 주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540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

2) 미국의 수출통제

미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AG, MTCR)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통제 기능은 통제목적, 대상품목, 대상국 등에 따라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26) 방위사업청, 전게서, 3면.

27) 이동은,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64호, 2024, 106-107면.; 방위사업청, 전게서, 3면.

28)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국제협력 체제로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자료: 국가기록원).

등에 분산되어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수행 및 관리는 각 수출통제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법규와 규정을 두어 법적 근거에 따른 통제를 한다.²⁹⁾ 주요 수출통제기관으로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재수출 및 재이전을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 Security, BIS), 군용 물자, 군용 서비스 및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무부 국방교역통제국³⁰⁾(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 DDTC), WMD 확산방지 및 외국인투자규제 등의 금융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 등이 있다. 각 담당 기관별 수출 품목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미국 수출 통제시스템의 원칙인 상호 협력과 보완에 의하여 수출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³¹⁾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별 주무부서 및 근거법은 아래와 같다.

<표 2> 미국의 수출통제 담당부처³²⁾

구분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통제대상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재수출 및 재이전	무기와 군용물자,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원자력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원자력 장비와 핵물질의 재수출	WMD 확산 관련 활동 및 규제 대상국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대상국가의 자산 및 수출 또는 재수출
근거법	국제긴급경제제한법(IEEPA) ³³⁾ 수출관리법(EAA) ³⁴⁾ 수출통제개혁법(ECRA) ³⁵⁾	무기수출통제법(AECA)	핵에너지법(AEA) ³⁶⁾ 핵확산방지법(Non-Proliferation Act) ³⁷⁾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국제비상경제제한법(IEEPA)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A)
근거규정	수출관리규정 (EAR)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정 (10 CFR Part 810)	해외자산통제규정(FACR)
담당부서	산업안보국(BIS)	국방교역통제국(DDTC)	국가핵안전청(NNSA) 수출통제정책협력실(OECPC)	해외자산통제국(OFAC)

29) 김지혜, 전게서, 4면.

30) ‘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 (DDTC)’는 ‘국방교역통제국’, ‘방위무역통제국’, ‘국방거래통제국’ 등으로 옮긴다.

31) 전략물자관리원, 전게서, 26면.

32) 김지혜, 전게서, 5면.; 방위사업청, 전게서, 3면.; 전략물자관리원, 전게서, 20-26면.

33) 국제긴급경제제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상 국가와 국민의 거래 금지, 자산 몰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한다. 참고로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 재무부는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34)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은 상무부의 수출규제와 반불매 준수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산업안보국(BIS)에게 수출관리규정 제정·관리·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3) 미국의 무기수출통제 법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를 보면, 이중용도품목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수출관리법(EAA)과 수출관리규정(EAR)을 기준으로 허가하고, 군용물자·국방서비스는 국무부 국방교역통제국(DDTC)이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기준으로 허가한다.³⁸⁾ 무기수출통제법(AECA)은 미국의 군용물자·국방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통제법으로 지역 차원의 무기통제 및 군축 합의를 장려하고 군비경쟁을 억제하는 것을 미국의 최우선정책으로 규정하고,³⁹⁾ 군용물자와 국방서비스의 수출입 통제, 최종용도 모니터링(End-Use Monitoring) 시행, 미사일 및 관련 장비·생화학 무기 및 핵비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군용물자 수출통제는 국무부 6개 차관(Under Secretary) 중 무기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이 담당하며, 정치군사업무국(Political Military Affairs) 산하 국방교역통제국(DDTC)에서 수출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국방교역통제국(DDTC)은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미군용물자리스트(U.S. Munitions List, USML)에 속하는 물자 및 서비스의 수출과 임시 수입의 통제를 담당한다. ITAR에서 ‘군용물자(Defense Articles)’는 미군용물자리스트(USML)에 지정된 모든 품목·기술데이터를 의미하고,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는 외국인에게 군용물자의 설계·개발·엔지니어링·제조·생산·조립·테스트·수리·유지보수·개조·운영·비무장화·파괴·가공·사용에 대한 지원(훈련 포함), 관련 기술 데이터를 외국인에게 제공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35)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은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에 수출통제 심의, 결정, 집행 등 권한을 부여하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규정한다.

36) 핵에너지법(AEA)은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수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핵물질 및 민감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 기준을 규정한다.

37) 핵확산방지법(Non-Proliferation Act, NPA)은 미국의 안보 유지 및 세계 평화를 위해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통제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8) 방위사업청, 전제서, 7면.

39) 정영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국제무기거래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17면.; Congress Research Service,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2021, p.2.

40) 방위사업청, 전제서, 3면.

41) ITAR PART 120—PURPOSE AND DEFINITIONS, § 120.31 Defense article, § 120.32 Defense service.
(<https://www.ecfr.gov/current/title-22/chapter-I/subchapter-M/part-120>)

2. ITAR에 의한 수출통제와 문제점

1) ITAR의 의의

미국 연방 무기수출통제법(AECA)은 대통령에게 군용물자(defense articles) 및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의 수출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37)⁴²⁾을 통해 수출통제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하였다.⁴³⁾ ITAR⁴⁴⁾은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시행규칙에 해당된다. 무기수출통제법(AECA)은 현행 연방법전 “22 U.S. Code Chapter 39 - ARMS EXPORT CONTROL”을 말하는 것으로 동 법은 14개의 Subchapter로 구성되어 있는데, ITAR은 14개의 Subchapter 중에서 ‘Subchapter III - MILITARY EXPORT CONTROLS’의 조문(§ 2771. Military sales authorizations and ceilings ~ § 2781. Transactions with countries not fully cooperating with United States antiterrorism efforts) 중 ‘§ 2778. Control of arms exports and imports’의 시행규칙에 해당된다.

ITAR은 수출통제와 관련된 용어 정의부터 미군용물자리스트(USML), 군용물자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수출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다. 그리고 미군용물자리스트(USML) 물자 수, 미 국무부 소관 군용물자품목 및 국방서비스의 지정, 미군용물자리스트(USML) 및 미 국무부 소관 군용물자품목을 범주별 수록, 장비/기술데이터/부품·구성품 등을 규정한다. 또한, ITAR은 국무부 국방교역통제국(DDTC)에서 담당하는데, DDTC의 주요 임무는 기술 혁신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ITAR을 개정하여 미국의 업체와 관련 파트너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군용물자 수출 과정의 신뢰가능·예측가능성을 도모한다. DDTC는 ITAR 규정에 따라 군용물자의 제조, 수출·일시 수입, 국방서비스의 공급, 미군용물자리스트(USML)에 기술된 품목을 포함하는 중개 활동 등을 규율한다. ITAR은 기술 발전을 비롯하여 미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의 이익에 있어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다. ITAR은 다음과 같이 11개 Part (Part 120 ~ Part 130)⁴⁵⁾로 구성되어 있다.

4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78 FR 16129 (March 13, 2013).

아래 사이트에서 전문 검색 가능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3/03/13/2013-05967/administration-of-reformed-export-controls>

43)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https://www.pmdtc.state.gov/ddtc_public/ddtc_public?id=ddtc_kb_article_page&sys_id=b9a933addb7c930044f9ff621f961932)

44) 22 CFR parts 120-130.

ITAR 품목의 해외 수출(예: 미국 방산기업이 외국 정부에 군용 드론 판매), ITAR 기술의 해외 이전(예: 외국 엔지니어에게 ITAR 관련 설계도 제공), ITAR 품목을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또는 조립(예: 미국산 군사 부품이 포함된 무기 제작), 외국인의 ITAR 기술 접근(예: 미국 내 기업에서 외국인이 ITAR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등은 ITAR에 의한 수출통제를 받는다.

2) ITAR의 수출승인

(1) 국방교역통제국(DDTC)에 등록

미국 내에서 군용물자(defense articles)의 제조·수출·일시수입 또는 국방서비스제공(furnishing defense services)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방교역통제국(DDTC)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제122.1조(a)항).⁴⁵⁾ 군용물자의 수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위의 제조, 수출, 일시수입 또는 국방서비스제공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등록이 요구된다. 다만, (1) 공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정부의 관리 및 공무원 (2) 관련 사업 활동이 ‘기밀 취급을 받지 않는 기술데이터(unclassified technical data)’의 생산으로만 국한되는 자 (3)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1954년)에 따른 제조 및 수출 활동을 허가 받은 자, 또는 (4) 연구개발 등 오로지 실험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품목제작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이 면제된다(제122.1조(b)항).

45) Part 120 Purpose and Definitions (목적 및 정의), Part 121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미군용물자), Part 122 Registration of Manufacturers and Exporters (제조자 및 수출업체 등록), Part 123 Licenses for the Export and Temporary Import of Defense Articles (군용물자 수출허가 및 임시수입허가), Part 124 Agreements, Off-Shore Procurement, and Other Defense Services (협정, 해외조달 및 국방서비스), Part 125 Licenses for the Export of Technical Data and Classified Defense Articles (기술자료 및 기밀 군용물자의 수출허가), Part 126 General Policies and Provisions (일반 원칙 및 규정), Part 127 Violations and Penalties (위반 및 벌칙), Part 128 Administrative Procedures (행정 절차), Part 129 Registration and Licensing of Brokers (중개업체 등록 및 허가), Part 130 Political Contributions, Fees and Commissions (정치 후원금 및 수수료).

46) 국방교역통제국(DDTC)은 홈페이지에 상세한 등록 절차를 게시하고 있다.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Registration”)

(https://www.pmdtdc.state.gov/ddtc_public/ddtc_public?id=ddtc_kb_article_page&sys_id=def5f542dbf8d30044f9ff621f961959)

(2) 미군용물자리스트(USML) 및 군용물자의 등급화

군용물자(defense articles)는 무기수출통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⁴⁷⁾에 따라 무기체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주요국방장비(major defense equipment)와 무기체계의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중요군사장비(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로 구분되는데, 주요국방장비(major defense equipment)는 독자적인 연구개발비용이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총 생산비용이 2억 달러 이상인 미군용물자리스트(USML)상의 중요군사장비(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에 해당하는 장비를 의미하고,⁴⁸⁾ 중요군사장비(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는 상당한 군사적 용도 또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 수출 통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미군용물자리스트(USML)에 등재된 품목을 의미한다.⁴⁹⁾ 따라서 미국 군용물자의 등급은 주요 국방장비(major defense equipment), 중요군사장비(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기타 일반 군용물자로 구분되는데, 어떤 품목을 등급분류하는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군용물자리스트(USML)상에 별표로서 표시하여 군사장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ITAR 제121.1조⁵⁰⁾에서는 21개의 범주(Category)⁵¹⁾로 분류한 미군용물자리스트(USML)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Category VI에서는 수상함 및 특수 해군 장비(Surface Vessels of War and Special Naval Equipment)를 규정하고, Category XX에서는 잠수함 및 관련 품목(Submersible Vessels and Related Articles)을 규정하고 있다. Category XVII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로 분류되는 미군용물자리스트(USML)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군용물

47) The Arms Export Control Act

Subchapter IV - General, Administrativ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Section 2794 - Definitions (22 U.S. Code § 2794 - Definitions)

48) 22 U.S. Code § 2794 - Definitions

(6) “major defense equipment” means any item of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on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having a nonrecur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of more than \$50,000,000 or a total production cost of more than \$200,000,000;

49) 22 U.S. Code § 2794 - Definitions

(6) “major defense equipment” means any item of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on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having a nonrecur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of more than \$50,000,000 or a total production cost of more than \$200,000,000;

50) § 121.1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https://www.ecfr.gov/current/title-22/chapter-I/subchapter-M/part-121>)

51) Category I - Firearms and Related Articles (화기 및 관련 품목) ~ Category XXI - Articles, Technical Data, and Defense Services Not Otherwise Enumerated (기타 열거되지 않은 군용물자, 기술데이터 및 국방서비스)

자, 기술데이터(technical data)⁵²⁾ 및 국방서비스를 규정한다.

(3) 대상품목에 따른 허가종류

ITAR의 경우 수출 대상 품목에 따라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Part 123에서는 군용물자의 수출허가, Part 124에서는 국방서비스의 수출허가, Part 125에서는 기술데이터 및 기밀군용물자(Technical Data and Classified Defense Articles)의 수출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군용물자를 수출 또는 임시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출 또는 임시 수입 전에 DDT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3.1조(a)항).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군용물자에 대한 디자인, 개발, 엔지니어링, 제조, 생산 등에 대하여 외국인을 지원(훈련 포함)하거나, 기술데이터를 외국인에게 제공하거나 외국군대의 군사훈련(military training)⁵³⁾을 실시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4.1조(a)항). 기술데이터 수출은 DDTR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해외 생산 목적이나 기술 지원에 사용할 수 없고, 수출 승인된 기술데이터는 최종 사용 국가 또는 허가된 해외 최종 사용자로부터 재수출, 양도 또는 전용될 수 없다(제125.1조(a)항).

3) 미국 무기수출통제의 문제점

(1) 수출통제 범규의 역외적용

미국 수출통제제도는 역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외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미국의 특정 제조기술로 제조한 품목(직접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산 완제품 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한 미국산 부품을 제조·가공한 외국산 제품을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경우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외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출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⁵⁴⁾

52) 기술데이터(technical data)는 제120.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제120.40조(g)항에 정의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방위산업체의 설계, 개발, 생산, 제조, 조립, 운영, 수리, 시험, 유지보수 또는 개조에 필요한 정보(여기에는 청사진, 도면, 사진, 계획, 지침 또는 문서 형태의 정보 포함), 미군용물자리스트(USML) 및 상업통제목록(the Commerce Control List)에 의해 관리되는 600 시리즈 품목에 대한 군용물자 및 국방서비스와 관련된 기밀 정보(classified information), 발명비밀유지명령(invention secrecy order)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또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53) 여기의 군사훈련(military training)에는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의 공식·비공식적 외국인 교육을 포함하고, 통신교육 과정, 모든 종류의 기술, 교육 또는 정보 출판물 및 미디어, 훈련 지원, 오리엔테이션, 훈련 연습 및 군사 자문이 포함된다.

54) 전략물자관리원, 전게서, 19면.

이중용도품목은 본래는 상업적 용도의 품목인데, 미국은 EAR을 개정하여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불량국가’에 대한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⁵⁵⁾

미국은 자국의 기술 보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소속 국가에 대한 ‘수출로 간주(Deemed Export)’하고, 사전허가를 통하여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자국 중요 기술의 불법적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

(2) 미 함정 MRO 협력에서 ITAR의 규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ECA)은 군용물자(defense articles) 및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의 수출을 통제하는 법으로 타국에 무기 판매, 대여, 허가 및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수출용 무기판매의 승인 등을 규정한다. 무기수출통제법(AECA)은 대통령에게 군용물자(defense articles) 및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의 수출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37)⁵⁶⁾을 통해 수출통제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하였고, 국무장관은 ITAR을 통해 무기수출을 통제한다. 따라서 ITAR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미군 함정 MRO 협력에 다음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군 함정 MRO 사업은 단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기술·문서·매뉴얼·시스템 접근 등이 포함되어 기술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미국(또는 미국 방산기업)과 협력하여 MRO를 수행하는 경우 미국(또는 미국 방산기업)과 기술협력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 특히 FCL(시설보안인증)이 요구되는 협력과 함께, ITAR 준수 체계도 MRO 협력 사업 수주에 많은 영향을 준다. 셋째, 한국의 조선소나 방산업체가 미국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한 함정, 시스템, 장비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⁵⁷⁾ ITAR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고, 승인이 거부되거나 승인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방산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의 함정을 수리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ITAR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TAR은 비록 ‘미국의 무기수

55) 이동은, 전계논문, 135면.

56)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78 FR 16129 (March 13, 2013).

아래 사이트에서 전문 검색 가능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3/03/13/2013-05967/administration-of-reformed-export-controls>

57) 예를 들어, 엔진, 통신장비, 무기체계 중 일부가 미국산 또는 미국 기술이 사용된 경우

출통제법'이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합정 MRO 협력을 추진하거나,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거나 MRO를 제공하는 경우, ITAR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3. 미 해군 합정 MRO 협력에서 ITAR의 시사점

모든 미국 내 군용물자 및 국방서비스의 제조업체, 수출업체, 중개업체는 ITAR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ITAR 위반은 미국에게 국가 안보·외교정책에 위해를 초래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기타 비용(평판 훼손, 수출 허가 취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은 ITAR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반드시 국방교역통제국(DDTC)에 등록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ITAR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집행 및 해석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다수의 포괄적 일반조항(catch all clause)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자사의 군용물자나 국방서비스 거래가 ITAR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신중한 규정 검토, 전문가의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하다.

ITAR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엄격한 통제 및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에서 상대국에는 부당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방위 산업 또는 관련 부문 기업들은 ITAR의 적용 범위 및 요건, 관련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DDTC는 기업이 ITAR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는데, 등록된 수출업체, 제조업체, 중개인 및 기타 방산업체들은, ITAR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 및 기타 규제 대상 활동의 모니터링·통제를 지원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⁸⁾

미국 업체와 협력하여 모듈화 공동생산(Modular Construction)⁵⁹⁾을 도입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미국 내 기반 시설과 인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효과가 크고, 한국은 이미 고도화된 자

58)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ITAR Compliance".

(https://www.pmddtc.state.gov/ddtc_public/ddtc_public?id=ddtc_public_portal_compliance_landing).

59) 모듈화 공동생산(Modular Construction)은 군함의 선체, 무기 시스템, 추진장치 등을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나눠 제작한 뒤 최종 조립소에서 결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무기 시스템을, 일본이 추진 모듈을, 미국이 최종 조립을 담당하는 방식의 '연합 조선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동화 및 모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모듈화 공동생산의 경우 ITAR에 의한 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에서 전투함 MRO 개방 및 미국 ‘반스-톨레프슨법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⁶⁰⁾의 개정 (또는 완화)이 필요하다. 반스-톨레프슨법 수정법은 외국 기업이 해군 함정에서 선체나 상부 구조물과 같은 주요 부품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미 군함 건조·수리는 해외에서 할 수 없는데, 동 법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이를 면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⁶¹⁾ 이에 따라 미국 제7함대의 군수지원함 MRO는 인근 국가에 맡기고 있는데, 2023년 기준 35척의 군수지원함을 보유한 미국 제7함대가 MRO에 지출한 금액은 2.5억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미국을 설득하여 미 해군 전투함 MRO 개방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⁶²⁾ 반스-톨레프슨법 수정법의 목적은 미국의 군사기밀 유출 방지인데, 2025. 7. 3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2명⁶³⁾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증진 및 지원법’ 제정안⁶⁴⁾에는 그 해결 방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60) 미 현행 연방법전 “14 U.S.C. 1151, 10 U.S.C. 8679”.

61) Midshipman Fourth Class Brian T. Di Mascio, “Foreign Shipyards Can Help the U.S. Navy Build Its Fleet”, U.S. Naval Institute, October 2024.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2024/october/foreign-shipyards-can-help-us-navy-build-its-fleet>)

62) 참고로 방위사업청은 2025년 8월 6일 ~ 7일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하였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간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2025. 8. 8.자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 등 한-미 방산협력 증진”).

63) 이언주·허성무·김동아·주철현·홍기원·김문수·송옥주·양문석·신정훈·황명선·김영배·민홍철 의원.

64) 이 법률안은 3개의 장에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제안 이유는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2) 목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이다. 다음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 전문 검색 가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D5E0C7D3B1C1X0Y3W1X0V9T0U5C5).

65) 2025. 8. 3.자 중앙일보 기사, “방산특구, 대통령직속 콘트롤타워…쏟아지는 ‘K조선 지원책’ 실효성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360>).

미 해군 함정 MRO 협력 확대(전투함 MRO 개방 등)를 위해서는 반스-톨레프슨법 수정법에 의한 제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기밀 유출 방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실한 보장 장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함정 MRO 사업장을 방위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 한국 내 특정 구역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장으로 신설하여 미국 측에 운영·관리권을 부여하고 한국 인력이 파견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V. 결론

최근 미-중 해양패권 경쟁, 주요국의 해양안보·해군력 강화 정책, 친환경 선박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국가 간 조선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인도 등 다수의 국가에서 한국과의 조선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한국은 조선협력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5. 7. 30.(한국 시간) 한국은 상호관세·자동차관세 15% 등의 대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대표단이 제시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⁶⁶⁾ 프로젝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⁶⁷⁾

노후선박 증가로 조선산업에서 MRO가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은 2025년 613.8억 달러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이 노리는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우방국가와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미 해군 함정 MRO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조선업을 한·중·일 3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미 해군 함정 MRO 협력 파트너로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2파전이 예상된다.

해군 함정 MRO는 글로벌 경기흐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보통 함정 MRO는

66)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한국 대표단이 명명한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세계적 수준인 한국 조선산업 기술로 침체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한국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2025. 7. 30.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67) The Maritime Executive, “South Korea Gets Ready to Roll Out “MASGA” Shipbuilding Investments”, Published Aug 3, 2025.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south-korea-gets-ready-to-roll-out-masga-shipbuilding-investments>).

일정 주기(약 5년)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조선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미 해군 함정 MRO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이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 함정 MRO 협력으로 미국 함정의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함정 기술 고도화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ECA)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통해 군용물자 및 국방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기술 보호 규제를 한다. ITAR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지만,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TAR의 이해 및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장(미국의 군사 기밀 유출 방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실한 보장 장치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덕기, “트럼프 2.0 시대, 한·미의 미국해군 함정 MRO와 함정 건조를 위한 협력 방안”, 군사논단, 제122호, 한국군사학회, 2025.
- 김상만,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2019,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2019.
- 김성국, 허윤석, “존스액트가 미국 해운에 미친 영향과 한국 해운에의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10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25.
- 김지혜, “미국 수출통제 안내가이드”, 전략물자관리원, 202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 Global Market Report 25-005, 2025.
- 방위사업청, “미국의 무기거래규정(ITAR) 번역”, 방위사업청, 2019.
- 이동은,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64호, 2024.
- 이소영,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
-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총람 2020(2권)”, 전략물자관리원, 2020.
- 정영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국제무기거래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 최용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경제안보 Review 24-8호, 외교부, 2024.
- 최용호, “美 조선 해운 강화 법안: SHIPS Act 분석 및 시사점”, 경제안보 Review 25-1호, 외교부, 2025.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33)”, 2024.

2. 외국문헌

Bryan Clark & Michael Roberts, “How America can rebuild its fleet to counter China’s maritime dominance”, The HILL, Jan. 14, 2025.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5083704-how-america-can-rebuild-its-fleet-to-counter-chinas-maritime-dominance/>)

Congress Research Service,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202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78 FR 16129 (March 13, 2013).

Henry H. Carroll & Cynthia R. Cook, “Identifying Pathways for U.S. Shipbuilding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Allies”, CSIS Briefs, 2025. 5. 15.

Matthew P. Funaiole, “The Threat of China’s Shipbuilding Empire”, CSIS, May 10, 2024.

Midshipman Fourth Class Brian T. Di Mascio, “Foreign Shipyards Can Help the U.S. Navy Build Its Fleet”, U.S. Naval Institute, October 2024.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2024/october/foreign-shipyards-can-help-us-navy-build-its-fleet>)

Mordor Intelligence, “Naval Vessel MRO Market Size & Share Analysis - Growth Trends & Forecasts (2025 - 2030)”.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naval-vessels-maintenance-repair-and-overhaul-market>).

US Congress, H.R.3151 - 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119th Congress (2025-2026), paras. 7-10.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3151/text/ih>).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https://www.pmddtc.state.gov/ddtc_public/ddtc_public?id=ddtc_kb_article_page&sys_id=24d528fd dbfc930044f9ff621f961987).

[국문초록]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에서 미국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의 수출통제와 시사점

김상만

최근 미-중 해양패권 경쟁, 주요국의 해양안보·해군력 강화 정책, 친환경 선박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국가 간 조선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선박 증가로 조선 산업에서 MRO(유지·보수·정비)가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압도적인 미 해군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군함 MRO는 해군의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역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체 조선소가 부족하고, 그마저 설비 노후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군함 MRO 지원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이 중요하고, 한국 조선업계에서도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군 함정 MRO는 글로벌 경기흐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보통 함정 MRO는 일정 주기(약 5년)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조선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ECA)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통해 군용물자(defense articles) 및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에 대한 엄격한 기술 보호 규제를 한다. ITAR에 따라 군용물자의 제조·수출·임시수입 또는 국방서비스제공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방교역통제국(DDTC)에 등록을 신청하고, 군용물자를 수출 또는 임시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출 또는 임시 수입 전에 DDT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데이터를 외국인에게 제공하거나 외국군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ITAR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지만,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함정 MRO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ITAR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집행 및 해석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다수의 포괄적 일반조항(catch all clause)을 두고 있어 미 해군 함정 MRO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TAR의 이해 및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강도 필요하다.

주제어: 국방교역통제국(DDTC),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국제수출통제체제, 군용물자
(defense articles), 국방서비스(defense services), 무기수출, 무기수출통제법(AECA),
미군용물자리스트(USML), 수출통제, 유지·보수·정비(MRO), 조선업, 조선협력,
해군 함정

[Abstract]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ITAR (International Arms Trade Regulations) Export Control in US Naval MRO Cooperation

Sang Man kim

Shipbuilding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due to complex factors such as the US-China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major countries' policies to strengthen naval power and maritime security, demand for eco-friendly ships, etc..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is emerging as a new strategic busines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due to the increase in aging ships.

Military conflict in the Indo-Pacific would demand overwhelming U.S. naval power. Naval vessels MRO plays a pivotal role in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rategic capabilities of global naval forces, and cooperation with U.S. Naval vessels MRO is becoming important. However, it has been said that the delay in the U.S. Naval vessels MRO is serious due to the lack of its own shipyards in the U.S., even the aging of facilities and productivity decline. The U.S. consider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close allie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and options for cooperation include allied participation in MRO. The cooperation with US Naval vessel MRO is becoming important, and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s also promoting the cooperation with US Naval vessel MRO as a strategic project. Naval vessels MRO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hat it is less affected by global economic flows, and is usually repeated in a certain cycle (about five years).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provides the authority to control the export of defense articles and defense services. The Department of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export and temporary import of defense articles and defense services governed by AECA, and the AECA is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The ITAR (22 CFR parts 120-130) governs the manufacture, export, and temporary import of defense articles, the furnishing of defense services, and brokering activities involving items described on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USML).

Key words: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defense articles, defense services, 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 (DDTC),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shipbuild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US Naval vessels,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USML)